경기도 공고 제2023 - 678호

2023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와 市·郡이 협력하여 도내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3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경기도지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 첨단기술·미래성장산업 등의 혁신역량강화 및 사업화 촉진

○ 기업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기도 여건에 맞는 성장유망분야 지역 전략산업 육성

□ **지원규모** : 35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1.5억 원 이내)

○ 추가 참여(지원) 市·郡 :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김포, 의정부, 광명, 군포, 이천, 의왕,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 **전문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내용

○ **(전략산업형)** 경기도 첨단기술업종(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및 경기도민 신기술 제안 우수과제 실증 연계 기술개발 지원

○ **(기업주도형)** 도내 기업 수요 중심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시장개척 및 사업화 촉진

□ 추진절차

제안서 접수	사전검토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	선행 특허조사	수정 사업계획서	협약체결 및 지원
제안 사업계획서 접수(G-PMS)	제안요건 및 유사기술 검토	사전검토 통과 기업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계획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종합적 발표평가	특허성 유무 조사	심의·조정된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협약체결 및 과제지원 (지원금 교부)

※ 과제지원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12개월)임

2. 지원금액 및 기간 · 사업비

□ 지원개요

○ 공통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기업(주관/참여) 및 대학·연구기관(참여)

※ 세부사항은 "3. 신청자격" 확인

○ 분야별 지원규모

지원구분		사 업 내 용	지원규모 (도비)	과제 수	과제당 최대 지원금
계		-	35.5억 원	35개 내외	-
전략 산업형	공공 기술	- 첨단산업(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全산업 분야의 기업 수요중심(자유공모) 단기 사업화 촉진 기술개발	4.5억 원	3개 내외	1.5억 (도비)
	산업 기술	- 도민 신기술 제안공모를 통한 우수과제 실증연계 기술 개발(지정공모)	2.0억 원	3개 내외	1.0억 (도비)
기업 주도형	일반	- 기업 수요 중심(자유공모)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신제품·시장개척) 및 사업화 촉진	24.0억 원	24개 내외	1.5억[2] (도비 1억, 시비 0.5억)
	북부 특화	- 경기 북부[1] 소재 기업(자유공모) 全산업분야 기술개발 지원	5.0억 원	5개 내외	

1) **경기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기업은 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1개 과제 초과 접수 불가

2)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가 **추가투자 *14*개 市·郡(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김포, 의정부, 광명, 군포, 이천, 의왕,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에 소재한 경우, 과제당 최대 *1.5*억 원**(도비 ***1***억원 **+** 시군 ***0.5***억원) 이내 지원

- **이 외의 市·郡은 최대 *1.0*억 원 이내 지원 (도비)**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현금+현물) 이상 부담

※ 주관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10% ~ 20%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주관연구기관 유형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중소기업	25%(현금 10%)이상
중견기업	25%(현금 15%)이상
대기업	25%(현금 20%)이상

[참고1] 사업비 계상 예시

○ 매칭 시군 소재 중소기업(연구소·전담부서)이 일반분야로 1.5억 원(도 지원금 1.0억, 시·군 지원금 0.5억)을 신청할 경우

구 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총 사업비)
	도 지원금	시군 지원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산식	≤(총 사업비×0.5)	≤(총 사업비×0.25)	≥(총사업비×0.1)	총 사업비-(도시군지원금+민간현금)	-
금 액	100,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0원
비 중	50%	25%	10%	15%	100%

○ 그밖의 시군 소재 중소기업(연구소·전담부서)이 일반분야로 도 지원금 1.0억 원 신청할 경우

구 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총 사업비)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75)	민간현금≥(총사업비×0.1)	총 사업비-(도지원금+민간현금)	-
금 액	100,000,000원	13,340,000원	20,060,000원	133,400,000원
비 중	75%	10%	15%	100%

3. 신청자격

□ 기준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일 (2023.3.20.)' 기준

※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종료시까지

□ 전략산업형(공공기술) 및 기업주도형(일반)

수행기관별		자 격	
주관 연구기관	기업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참고2] 참조) 설치·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참고2] 참조) 설치·운영한지 만 1년이 지난 기업(2022.3.20. 이전 연구소 설립)
참여기관	기업	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개발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비영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전략산업형(산업기술) ※ [별첨2] 지원 과제 내역 참조

수행기관별		자 격	
주관 연구기관	기업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참고2] 참조) 설치·운영
			② **접수마감일(2023.4.28.) 기준**,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참고2] 참조) 설치·운영
참여기관	기업	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개발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비영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지원조건	제안자	① 제안자가 기술개발 참여 필수(연구책임자 혹은 참여연구원) ② 제안자 중심으로 신청 자격 요건 맞게 수행기관별(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등) 역할을 구성하여 사업구성 ③ 제안자에 대한 필수 인센티브 제공(사업 협약前 협상)	

□ 기업주도형(북부특화)

수행기관별		자 격	
주관 연구기관	기업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경기 북부(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2] 참조) 설치 ·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참고2] 참조) 설치·운영한지 만 1년이 지난 기업(2022.3.20. 이전 연구소 설립)
참여기관	기업	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개발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비영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참고 2]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 2023.4.24.(월) 9:00 ~ 4.28.(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만 가능)

○ 경기도R&D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전산 제출

① 연구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 책임자 회원가입(필수)

② 과제관리 ▶ 신청서 ▶ 등록

③ 분야별 공고선택 ▶ 기본정보 및 사업비 입력

④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파일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서약서 등 신청서류에는 기업(관)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

* 제출된 계획서 및 서류,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 위 ·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불가 (단, 필요시 전문기관이 별도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목록

연번	서 식 명	해당 서류	
		필수	해당시
①	사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서식1』 참조)	O	
②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해당시)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국세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공고일(2023.3.20.) 이후 발급분 제출	O	
③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해당시)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공고일(2023.3.20.) 이후 발급분 제출	O	
④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rnd.or.kr/)에서 공고일(2023.3.20.) 이후 발급분 제출	O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해당시)의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최근(2022년 귀속분)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 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O	
⑥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 소정양식, 『서식2』 참조, 5.지원제한 ④참조	O	
⑦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소정양식, 『서식3』 참조)	O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1부	O	
⑨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소정양식, 『서식4』 참조)	O	
⑩	참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소정양식, 『서식5』 참조)		O
⑪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O
⑫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참고4] 참조)		O
⑬	기타 전문기관장 또는 시·군(해당시)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O

- 구비서류 제출 시, 파일별 **연번 부여**하여 제출((예) 1. 사업계획서)
- 필수서류 누락 및 공고일 이전 발급분 서류 제출 시 사전통보 없이 결격처리 되므로 제출 전 반드시 확인 바람

5. 지원제한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 전산등록 마감일[2023.4.28.(금)]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장·연구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② 기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중 2020.3.20.(3년)이후에 종료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대학 및 연구소는 제외

③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1개 기업이 <u>복수의 과제를 접수</u>하는 경우 (2023년도 경기도 R&D 첫걸음 지원사업 포함)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분야)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④ 이미 개발하였거나 이미 지원받은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 완료하였거나 또는 이미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미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 이나 "불성실 수행" 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⑥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

⑦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 수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 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관 기본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⑧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2022년 귀속분)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단, 시설투자 등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추가 증빙 제출 필요)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6. 기술료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 다만,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불성실수행” 이 아닌 경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주관연구기관은 성공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율 : 총 매출액이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道 지원금의 50배 증가시, 총 지원금의 50% 납부

ex) 성공기술료(지원금 1.5억 기준) : 매출액 75억 원 증가시, 75백만 원 납부

[참고3] 성공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 징수대상 : 과제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회계연도 기준)의 기간에 해당기업 **총 매출액이 道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한 기업**
- 기술료율 : 도 지원금의 50%
  - ※ 총 매출 증가액 산정 기준 : 종료연도 이후 3개년 후 당해 12월 말 매출액- 종료 당해연도 말 매출액 (해당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는 경우 40%를 감면
  - ※ 사업수행 결과 “우수”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30% 감면

7. 선정평가기준 및 추진절차

□ 평가기준

○ 사전 적격심사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조사(필요시)** :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양산)능력 등 현장 확인

○ **발표평가** : 사전 적격심사(서류 및 현장)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개발계획의 적정성(15점),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목표달성 가능성(25점), 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영업·마케팅 역량(30점), 가산점(최대 5점)

○ **과제선정** : 발표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경기도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 취소

[참고4] 가산점 적용 대상 및 기준

- 가산점 적용대상

① 5점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성과확인을 받은 '성과공유제 등록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② 2점

- 경기도가 선정한 '일자리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와 그 참여기관이 공동수행하는 과제

③ 1점 : 기타 경기도지사가 '인증(지정)'한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u>※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 합산</u>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 가산점은 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② 가산점은 <u>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연구기관에 한하여</u> 적용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2023. 4. 28.(금)]을 기준으로 함

④ 가산점은 유리한 1건에 대하여 적용(최대 5점)

8. 기타 공지사항

□ 사업 설명회

○ 일시/장소 : 2023. 4. 5.(수) 14:00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B2)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12(삼평동)

○ 내용 : 2023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등 산학연 협력사업 시행계획,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전산접수요령 등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존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위탁기관(해당시)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또는 대학 및 연구기관, 해외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되,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여야 함.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대학 및 비영리기관 포함)은 지원금(도-시·군 총액)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발급수수료는 연구비(직접비-연구활동비)로 필수 계상

□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참여市·郡(14개) 소재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해당 市·郡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 등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전액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때 삭감·조정되는 연구비는 기업부담 원칙임.

○ 참여市·郡지원금 수혜 기업이 과제 수행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해당 市·郡지원금은 전액 반환해야 함을 원칙

□ **과제선정 취소**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PMS(R&D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 이미 개발되었거나 이미 지원된 다른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수행 신청자격(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연계**

○ 연구비는 범부처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하여 가상계좌로 교부되며 선정기업은 RCMS 연계 가능한 참여은행의 계좌 및 법인카드(사업비전용카드)를 필수로 사용해야 함.

□ **R&D 졸업제 시행** : 최대 3회까지만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지원 가능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 당 총 3회를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능하며, 2018년부터 기산됨.

□ 연구비 부정사용시 제재

○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시 제재부과금 부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9조등에 의거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문의처

□ 사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부문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

☎ 031) 776-4855 / ✉ rnd@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

□ 온라인 전산 접수 (온라인 전산등록 사이트 접속 등) : 031) 776-4857

서 식 : 1. 사업계획서
2.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3.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5. 참여의사 확인서

별 첨 1.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2. 전략산업형(산업기술분야) 지정과제 내역
3. 산업기술분류표
4.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끝.